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창의·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

## [고영찬 의원 발의]

의안번호	2312
------	------

발의일자 : 2023. 3. 10.

발 의 자 : 고영찬 의원

찬 성 자 : 도병두 의원

### 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을 위한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금천구 학생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교육여건 향상 및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추진을 통해 학생이 행복한 도시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. 차별금지(안 제4조)
- 라. 지원사업의 범위 및 위탁(안 제5조 및 제6조)
- 마. 홍보(안 제7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련법령

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
- 2) 「인성교육진흥법」 제4조
- 3) 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 제5조의2
- 4) 「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2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
다. 기 타

- 1) 입법예고 : 2023. 3. 11. ~ 2023. 3. 17.

## 서울특별시 금천구 창의·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학생을 위한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천구의 모든 학생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학생”이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,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.
2. “창의인성”이란 사회·문화적 가치에 부합하는 창조적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건강한 인성을 말한다.
3. “창의인성교육”이란 ‘창의인성’을 실현시키는 교육으로서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‘창의교육’과 「인성교육진흥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‘인성교육’의 상호 보완적 교육을 말한다.
4. “발명교육”이란 「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학생이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

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진흥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한다.

② 구청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창의적 역량과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차별금지) 구청장은 학생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·장애여부·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.

제5조(지원사업의 범위 등) ① 구청장은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체험 사업
2. 예(禮), 효(孝), 정직, 책임, 존중, 배려, 소통, 협동, 양성평등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
3. 지역특색에 맞는 발명교육 및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
4. 생명안전 관련 교육 또는 체험 사업
5. 학생의 진로 탐색·설계에 필요한 진로교육 사업
6. 그 밖에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, 사업의 활성화와 참여 촉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하거나 기념품·상품권 등과 같은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.

제6조(위탁 및 지원)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관련 개인,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,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와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제7조(홍보) 구청장은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계획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계법령

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[시행 2022. 1. 13.] [법률 제18661호, 2021. 12. 28., 타법개정]

**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

가. 어린이집·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·운영·지도

나. 도서관·운동장·광장·체육관·박물관·공연장·미술관·음악당 등 공공교육·체육·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
다. 지방문화재의 지정·등록·보존 및 관리

라. 지방문화·예술의 진흥

마. 지방문화·예술단체의 육성

## □ 「인성교육진흥법」

[시행 2020. 9. 12.] [법률 제17472호, 2020. 8. 11., 타법개정]

**제4조(국가 등의 책무)**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,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범국민적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⑤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인성교육에 관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.

## □ 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

[시행 2017. 3. 21.] [법률 제14630호, 2017. 3. 21., 일부개정]

**제5조의2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 교육청 상호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,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
## □ 「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22. 12. 11.] [법률 제18887호, 2022. 6. 10., 일부개정]

**제3조의2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** ① 국가는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별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그 시책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③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발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